

하남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156
----------	------

제출연월일 : 2020. 11. .
제 출 자 : 하 남 시 장

1. 제안이유

- 「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」 제61조 제2항, 제3항 개정에 따라 방재단원이 재난의 예방·대비·대응·복구 등의 임무 수행 시 활동수당 지급근거 마련

2. 주요내용

- 가. 방재단 임원의 구성 개정 (안 제4조제1항)
 - (현행) 단장1인, 부단장1인, 간사1인 → (개정) 단장, 부단장, 간사
- 나. 방재 단원이 재난 예방·대비·대응·복구 등의 임무 수행 시 활동 수당 지급 규정 신설 (안 제9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)

3. 개정조례안 : 덧붙임

4. 신구조문 대비표 : 덧붙임

5. 관계법령 발췌서 : 덧붙임

-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1조

6. 예산수반 사항 : 해당없음

7. 입법예고 결과 : 의견없음

- 가. 입법예고기간 : 2020년 10월 24일 ~ 11월 11일(20일간)
- 나. 의견내용 : 의견 없음

8. 부서협의 결과 :

- 예산수반 사항, 성별영향분석평가, 규제 개혁 : 의견없음

9. 참고사항 : 해당없음

10. 관련부서 : 경기도 자연재난과

하남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하남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1항 중 “단장 1인, 부단장 1인, 간사 1인” 을 “단장, 부단장, 간사” 로 한다.

제9조의 제목 “(소집)” 을 “(소집 등)” 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④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16조에 따라 재난의 수습 등을 위하여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·운영하는 경우로서 시장이 방재단을 소집하여 재난의 예방·대비·대응·복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단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집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- ⑤ 제4항에 따른 소집 수당은 일반직 공무원 9급에게 적용되는 시간외 근무수당 단가로 1시간 단위로 지급하되, 1일에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. 다만,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지역자율방재단원에게는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.
- ⑥ 단원은 소집수당을 청구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활동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서명		안전정책과
입안자	부서장 직위 · 성명	안전정책과장 박종현
	팀장 직위 · 성명	안전협력팀장 전용신
	담당자 성명 · 전화번호	전용신 (031-790-5109)

[별지 제1호서식]

임명장양식

임명장

주소
성명

귀하를 하남시 지역자율방재단장으로 임명
합니다.

년 월 일

하남시장

관계법령 발췌서

■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

제61조(소집 등) ① 재난의 예방·대비·대응·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자율방재단장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지역자율방재단을 소집할 수 있다. 다만,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역자율방재단장과 협의하여야 한다. <개정 2020. 6. 16.>

②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소집된 지역자율방재단원이 재난의 예방·대비·대응·복구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 <신설 2020. 6. 16.>

③ 제2항에 따른 수당의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·군·구의 조례로 정한다. <신설 2020. 6. 16.>

[전문개정 2012. 8. 22.]

[제목개정 2020. 6. 16.]